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(경유)

제목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PET 촬영 시 Full PACS 이용 비용 산 정방법 안내

- 1. 관련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-1547(2024.6.26.) "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 급여기준 관련 건의"
- 2. 위 호와 관련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」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분류되어 있는 PET 촬영 시 전액본인부담및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,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(Full PACS)이용 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.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[별표6] 2호 및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,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(Full PACS)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[별표2] 제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산정함.
- 적용시점: 202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. 끝.

보 건 복 지 부



전결 07/29 ^{주무관} **오혜인** ^{보건사무관} 배홍철 ^{보험급여과장} **정성훈**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이과-3227 2024.07.29. 접수 2024.07.31.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wisvolent312@korea.kr 전화 044-202-2737 전송 044-202-3934 / wisvolent312@korea.kr / 비공개(5) 행복을 연결합니다 힘이되는 129